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4. 6. 4 선고 2023가단8528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청구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6. 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347.4분의 39.7262 지분에 관하여 2020. 8. 5.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[원고는 최종적으로 2024. 5. 3.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주문 제1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“2020. 8. 20.”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으나, 최초 소장에서 “2020. 8. 20.”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2023. 12. 6.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서에 “2020. 8. 5.”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바

있었던 점,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전유부분인 C호가 2020. 8. 5. 강제경매로 원고에게 매각된 사실(원고가 매각대금을 완납한 사실)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최종적으로 변경한 청구취지의 “2020. 8. 20.”은 “2020. 8. 5.”의 오토크인 것으로 보인다]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 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선민정

별지